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간의
압복장과 두간장에서 의 육체 운동에 관한 의 정 서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 압복장과 두간장에서
특별작업 및 병상 운동 작업을 순리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평등 조리와
우호 협조의 원칙에 근거하여 본 의정서를 다음과 같이 체결 한다

제 1 조 양쪽 쌍방은 자기 국경내에서 체벌한 목적을 목적으로 전성하여
압복장과 두간장을 리용하여 투쟁 한다. 목적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중국측은 장택원 경내의 이집도구로부터 장택원 소재지까지 조선측
은 삼포로부터 백산시까지 목적의 넓이는 8매—리라고 하고 중국측은
장택원 이하 조선측은 백산시 이하에서의 목적의 넓이는 21매—
리라고 한다. 두간장 구역에서 중국측의 삼합이상과 조선측의 최영이
상에서의 목적의 넓이는 18매—리라고 한다. 상술한 목적의 기리는
모두 150매—리를 초과하지 못한다. 표적이 없는 지역에서의
목적의 규정은 이상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역하면 경우를
따른하고 목적의 넓이는 모두 고정 표적의 표공 넓이에 복종하며
야하며 표적 안전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한다

제 2 조 쌍방은 목적의 순리로운 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
항들에 동의 한다

1. 중국측 습안과 조선측 간표간에 있는 제 1 호 가설표와 제 2 호

가설교의 벽야는 2개를 제거하며 승리교의 벽야는 6개를 제거하며 중국측 장진 하구와 조선측 정성진간에 있는 교량의 벽야는 2개를 제거하며 중국측 마시덕과 조선측 최수간에 있는 교량의 벽야는 3개를 제거하며 중국측 연화과 조선측 북하동간에 있는 교량의 벽야는 2개를 제거 한다 벽야를 제거 완료하는 기간은 1956년 5월 15일까지로 한다 벽야를 제거한후 일방이 복구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때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후 3~5일내로 다시 복구 할 수 있다 (만 천도 가설교는 포함하지 않음)

2. 강수릉 철로의 교공간에 간일 일방이 八자형 봉대(보호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할때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설치 할 수 있다
3. 본조 제1항에서 지적한 벽야의 제거 및 복구 제2항에서 지적한 八자형 봉대의 설치 또는 플랫폼의 신설 보수 및 수로의 굴착은 중국 경내의 것은 중국측에서 책임지며 조선 경내의 것은 조선측에서 책임을 진다 그러나 작업의 편의를 위하여 쌍방의 동의를 의하여 일방에서 단독적으로 책임을 질 수 도있다 제거한 재료는 교량 소유측에 인도 보관하여야 한다
4. 교량 수축기간에 있어서도 교량 수축에 영향을 주지 않는한 쌍방은 여전히 목적 운동을 진행 할 수 있다

제3조 벽두이 교량을 통과하는 시간은 주간(위 불레누리 워 질때까지를

주간으로함)으로 제한 하되 주간에 안개가 끼거나 날이 흐리거나 비가 올 때에는 100미터 밖에서 봉별표를 식별 할 수 있는 정형하에서 정상적으로 통과 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통과 할 수 없으며 폐목이 통과 할 표상은 쌍방의 현장 인원들이 구체적으로 규정 한다

제4조 봉별 작업은 일반적으로 주간에 진행하되 폐목이 교량을 통과 할때에는 폐목마다 2명 이상의 숙련공이 이를 조종하여야 한다

제5조 생산의 특수 수요에 의하여 야간에도 진행 할 수 있으나 야간에는 폐목이 교량을 통과 할 수 없으며 야간 봉별은 반드시 사전에 봉별 기간과 구역을 상대방 전방 부문에 통지하여야하며 폐목우에 신호등과 기타 필요한 장치를 설치하여야하며 야간 봉별은 그에 상응한 숙련공 수를 더 배치하여야 한다

제6조 봉별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사무원(수로 보수 인원을 포함함)들은 반드시 "봉별 작업증"을 소지 하여야 하는바 이 증명서는 중국측은 중화인민공화국 힘업부에서 발급하며 조선측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힘업부에서 발급하되 쌍방의 증명서는 모두 중국문과 조선문으로 작성 한다

제7조 제6조에서 규정된 "봉별 작업증"을 소지한 인원들은 하상내(자연장안 이내)에서 운제 작업을 할 수 있다 봉별 도중에 간일 상계방 경내에 상륙하여 류속 혹은 봉별 작업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그의 정류 범위는 다만 쌍방에서 규정한 제별장에 한하고
 상륙후 한시간 내에 그 지방의 전방 부문이나 공안 기관 혹은 향
 촌·인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중국측은 상술한 조선측의 인원들
 이 특별 기간내 중국 습안현 하루 지방에서 5리(중국리)의 도포
 를 착용 할 수 있다는것을 동의하며 중국측에서 조선측의 도포를
 착용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선측에 제기 할 수 있다 상술한
 인원들은 상대방의 일체 범행을 관수 하여야하며 무기화 금지품의
 휴대와 특별 작업과 관계없는 활동을 금지하며 동시에 산림 보호와
 화재 방지에 주의하여야 한다

제8조 쌍방은 특별 또는 비상 작업에 관한 문제를 위하여 상대방의 국경
 구안(쌍방 국경선에서 통행이 위락되는 출입구)에 붙어 갈때에는
 반드시 "특별 작업 고정 대표증"을 소지 하여야 하는바 이 증명
 서는 쌍방의 전방 총대표 혹은 부총대표가 발급하며 매개의 면제
 지점에서 쌍방은 각각 3매씩 발급 할 수 있으며 1인당 1매로
 한다 이 증명서를 소지 할 대표는 중국측은 현급 간부이며 조선측
 은 군급 간부 혹은 중국측 현급 조선측 군급 간부에 해당하는 선
 임 특별 인원(중국측은 현 현업과장 조선측은 특별 작업소장 혹
 은 현산과장 및 작업소장의 동남의 인원)이며 통행 할 때에는 자
 기 기관의 심입장을 반드시 휴대하여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통행 할
 수 없다 모동자들이 하상을 넘어 표류목과 파편목을 수집하며 할
 때에는 미리 상대방의 전방 지방 인민위원회와 전방 부문에 통지하

여야하며 동시에 자기측의 변방 대표의 신임장과 "특별 작업중"을
저장하여야 작업을 진행 할 수 있다

제9조 쌍방의 의무는 원칙상 본국 강안에 정류하여야하나 자업 지형상 제
약으로 상대방의 강안에서 정류하여야 할 때에는 다음에 규정한 제
별장에 정류하여야 한다

조선에 있는 중국측의 계별장은 양분간 규정하지 않고 필요 할때에
조선측에 제외하여 동의를 얻은후 결정 한다

중국에 있는 조선측의 계별장은 권필성 강택원 판도구, 심도구, 심이
도구, 심삼도구와 권필성 습안원 상 해방준파 립강원 사도구로 한다
자업 계획의 특수한 경우에 불확하였을 때에는 상술한 제한을 받지
않으며 상대방에서는 가능한 조건 밑에 그를 구원하여야 한다 상술
한 계별장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증감 할 수 있다

계별장이 농민의 경작지를 사용 할 때에는 사용측은 해당한 보수를
농민에게 주어야 한다

제10조 목재의 순리로운 운송을 보장 하기 위하여 쌍방은 목재 운송에 관
한 기술 문제를 호상 교환 할 수 있으며 목종과 목우와 종수등
3종의 기상 예보와 물보 자료를 호상 제공 한다

물보 방법은 쌍방이 이미 얻은 상술한 기상 자료를 전화로 상대방
에 묻지 한다 제공 할 지점은 조선측은 책산, 증강, 안포, 수중, 신
회수, 무산으로 하고 중국측은 강택, 립강, 습안, 라고르, 안둥, 남명으
로 한다 물보 전달 기관은 조선측은 시 및 군 인민위원회로 하고

조선족은 시 및 군 인민위원회로 한다

제11조 일방이 수포를 보수 하기 위하여 상대방 명로 위해서 제석 및 기타 작업을 진행 할 필요가 있을때와 화약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모두 상대방의 예방 지방 휘 혹은 군 인민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하며 상대방의 원 및 군 인민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서 진행 한다 그러나 강중 파압이 상대방의 강안 보호와 안전에 관계 없을 때에는 미리 상대방의 예방 부문에 통지하고 진행 할 수 있다

제12조 일체 운송 할 목적은 전부 일정한 국인을 적어 표시함으로써 쌍방이 표류부의 파벌부를 습득하였을때 그의 표시에 근거하여 처리케 한다 간일 갑축의 표류부의 파벌부이 을축 강안에 표류 하였을 경우의 을축은 그를 보관하여야하며 갑축에 통지하면 8개월내에 책임지고 가져가야하되 이에 대하여는 호상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간일 기관전에 인수하지 못할때에는 상대방에 연기 할것을 통지하여야하며 그러나 늦어도 더 8개월을 초과 할 수 없으며 간일 기관이 지나서도 차차 가지 않으면 을축의 원 또는 군 인민위원회에서 그를 처리 한다 그러나 상대방의 주민들이 일방의 표류부의 파벌부를 수집하였을 경우에는 수집자에 대하여 보수를 주어야하며 보수는 수집속 본국 화폐로 지불하되 매차 인수 할때마다 보수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보수금액은 쌍방의 협정이 그 지방의 보통 임금 표준에 근거하여 협의 결정 한다

제13조 목재가 코랴를 파손 시켰을 때에는 목재 소유주에서 파상의 복구의

책임을 지야 한다. 만약 교량이 파손된 원인이 불명확 할 때에는 쌍방이 대표를 파견하여 감정 할 수 있다.

제14조 쌍방이 특별 작업 또는 특별 작업과 관련된 작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선박을 사용하지 않으리 단될 경우에는 선박을 사용 할 수 있다. 그러나 선박위에 있는 인원들은 상대방의 피박 없이는 상대방의 장안에 상륙 할수 없다.

제15조 쌍방은 운계의 수요를 만족하기 위하여 저술에는 쌍방대표의 협의에 의하여 하상 범위내에서 일정한 범도를 설정하고 운계작업을 진행 할 수 있다.

제16조 쌍방은 편락상의 편의를 위하여 대표를 파견하여 지정된 회의 지점에서 협의를 진행 할 수 있다.
회담의 지점은 중국측은 장백, 뫼강, 갑안, 장진하구, 마시데, 안동, 고성리, 남경, 삼함으로하며 조선측은 핵산, 풍강, 간포, 청성진, 최수, 신최수, 삼강, 무한, 최녕으로 한다.

제17조 일방이 타방에 대한 화폐 지불은 쌍방의 은행 환자를 통하여 처리 한다.

제18조 본 의정서가 효력을 발생한후 1953년 8월 30일에 체결한 중조간 의 특별 작업에 관한 의정서는 폐기 한다. 쌍방은 즉시로 본 의정서를 압록강과 무간강 유역에 있는 자기측의 관제 기관과 해당 지방 인민들에게 전달한 통지를 하여야하며 자기측 국제 운송 인원들

에게 본 의정서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제19조 본 의정서에 라당치 못한 점이 있으면 쌍방은 합의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보충 할 수 있다

제20조 본 의정서는 조인한 날부터 효력을 가지며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만기 6개월전에 일방으로부터 제외하여 상대방이 동의 할 때에는 다시 5년간 연장 할 수 있다

본 의정서는 1958년 1월 4일 북경에서 체결하며 합계 두부로 하되
북부는 중국문과 조선문으로 작성하며 두가지 같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중화인민공화국정부
권권 대표

刘成栋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의
위임에 의하여



중소류별고정대표증

중화인민공화국
변방총대표발

0.5cm		1cm	10cm	사	성명	
				친	성별	
					년령	
					본직	
		직장명				
		직 위				
		증 호	자	제	호	
		발급기관				
		발급년월일	년	월	일	
-----1.5cm-----						

증 조 류 별 고 정 대 표 증

사 용 규 칙

1. 이 증명서는 증조 쌍방이 지정한 인위간 후대 합것이며 압록강과 두만강연안 련계지점에서 류별작업과 관련한 문제를 련계할때 사용 한다
2. 이 증명서의 소지자는 반드시 의정서의 일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이 증명서의 소지자는 쌍방 국경 구안을 통행 할 수 있다
4. 이 증명서에 기재한 작합은 자기손으로 고치지 못하며 간일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보고하여 부호를 성명하고 따로 재교부를 신청하여야한다
5. 이 증명서는 발급한 날부터 일년에 일차씩 교환합것이며 간기되면 즉시 취소 합것이다

류 별 작 업 증

중 화 인 민 공 화 국
림 업 부 발

	사 친	성명	
		성별	
		년명	
		본적	
	직장명		
	직 위		
	주 소		
	증 호	자	계 호
	발급기관		
	발급 년월일	년	월 일

1250mm

류 별 작 업 증

사용규칙

1. 이 증명서는 초중 류별작업인원이 압록강과 무단장 하상내에서 작업을 진행할때에만 사용한다
2. 이 증명서의 소지자는 내방 경내 쌍방이 협의한 계별장에서 정류 혹은 류숙 할 수 있다
3. 이 증명서의 소지자는 반드시 의정서의 일체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한다
4. 이 증명서는 본인만 소지 할 것이며 라인에게 차용하지 못한다
5. 이 증명서에 기재한 각항은 자기 손으로 고치지 못하며 만일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무효를 성명하고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